[08]월 보건관리 상태보고서-간호사

사업장명: 제일유리 주식회사

* 상태보고서는 사업주(관리책임자)가 선람하여 내부결재 후 신속한 조치를 해야합니다.

1. 보건관리상태 방문일자: 2026-08-05

사업자 현황	☐ 광업 ☐ 제조업 ☐ 건설업 ☐ 비제조업				
	업종분류: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				
근로자현황	총 근로자수 : 0명			입사자수	퇴사자수
전 월	33명 사무직: 남 4명 / 여 1명 사무직 외: 남 25명 / 여 3명			0명	0명
당 월	0명 사무직: 남 0명 / 여 0명 사무직 외: 남 0명 / 여 0명			0명	0명
산업재해 발생현황	총 재해자수	사망자수	부상자수	업무상질병 재해	재해율(%)
전 월	0명	0명	0명	0명	0
당 월	0명	0명	0명	0명	0
연누적현황	0명	0명	0명	0명	0

2. 업무수행내용

◎ 건강관리

업무수행내용 : 기타	점검결과(보건관리상태) :

<온열질환 예방 지도>

o 사업주는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60조, 제562조 및 제571조에 따라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
o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폭염 예방 기준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(물·냉방장치·휴식·보냉장구·119 신고) 이 법령에 명문화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, 체감온도 31℃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며,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.

[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]

■ (체감온도 33℃ 이상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
■ (체감온도 35℃ 이상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 옥외작업 중지

■ (체감온도 38℃ 이상, 폭염중대경보)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(★신설)

◆ 확인 및 지도

⇒ 체감온도 기반 단계별 예방조치 및 민감군 집중관리 운영 현황 점검